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김원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
박세채·이정희·정지원 의원(7인)

1. 제안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 제5조)
- 라.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7조)
- 마.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안 제8조)
- 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부서검토: 건축디자인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조 례 명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7조)○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안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안 제9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임○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방안 등
- 안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 안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이혜미(☎054-480-5512)